

1. 개정이유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73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추가하는 한편,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교육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실태점검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추가
(안 제31조의6제1항 및 제31조의7제2항)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및 오기 정정(안 제31조의6제2항, 제31조의6제6항 및 제31조의7제1항)

다.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3호)

라.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 수정(안 제10조제2호 및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사전 심사 요청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16조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31조의6제1항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8조제4항”을 “영 제48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3제6항”을 “법 제57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3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3제8항”을 “법 제57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훈련) ①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에 관하여 시행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중 어느 하나의 것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10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훈련)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
<신 설>		3.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교통안전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영 제39조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 중		제16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	-----	-----

같은 조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자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9조제4호의 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를 통하여 교통사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

----- 한국도로교통공단-----

-----.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

공동주택단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
----- 영 제48조의2제4항-----

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법 제57조의3제7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
법 제57조의3제9항-----

야 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u>공동주택단지</u>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 ----- <u>공동</u> <u>주택단지 또는 학교</u>----- -----.
---	---